



제 417국회 (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검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전 심사 제도 도입〉
■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67호)

2024. 8.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영세 · 이인선 · 주호영 · 김정재 · 광규택 · 임이자
안철수 · 김형동 · 조승환 · 김소희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6. 5.

3. 회 부 일 : 2024. 6. 11.

※ 의안번호 : 16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가지게 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영리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는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없으므로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다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

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그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현행법은 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하여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상 절차에 더하여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 즉, 사전 심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29 및 §29의2)	개정안 (§29의3 신설)
<u>[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u> ○ 의원이 임기 중 겸직 및 영리업무 <u>종사하는</u>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 ↓ ○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직·영리업무의 겸직·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결정 및 의원에게 통보.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존중 ↓ ○ 겸직 금지 해당 시 3개월 이내 휴직 또는 사직 ○ 영리업무 종사 금지 해당 시 6개월 이내 영리업무 휴업 또는 폐업 ↓ ○ 의장은 겸직 통보 15일 이내 겸직 내용 공개	<u>[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u> ○ 의원이 임기 중 겸직 및 영리업무 <u>종사하려는</u> 경우 의장에게 신고 ↓ ○ 결정 절차 및 방법 : 좌동 ↓ ○ 겸직·영리업무 종사 여부 통보 전 겸직·영리업무 종사 불가 ↓ ○ 겸직·영리업무 종사 가능 결정받은 의원이 그 직을 가지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통보 15일 이내 겸직 내용 공개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3(검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대한 사전 신고) ① 의원이 임기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의장의 통보가 있기 전에는 신고한 직을 가질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결과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의원이 임기 중에 해당 직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⑤ 의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의장의 통보가 있기 전에는 신고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른 신고 결과 영리업무가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의원이 임기 중에 해당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29조¹⁾는 의원의 직무전념성 확보를 위하여 검직을 제

1) 「국회법」 제29조(검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

한하면서 예외적으로 ① 공익 목적의 명예직, ② 법률에 따른 임명·위촉직, ③ 정당의 직에 한정하여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9조의2²⁾는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규정하면서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영리업무 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살펴보면, 의원이 ‘당선 전’에 그 직을 가지고 있거나 ‘임기 중’ ①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② 법률에 따른 임명·위촉직을 가진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능 여부를 결정함. 의원이 ‘당선 전’에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임기 중’ 임대업 등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침.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을 하려 하거나 영리업무

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이전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우선 다른 직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이를 신고하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 체계를 가짐.

이에 따라 의원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신고를 한 이후 불가결정이 내려지면 의원이 겸직 중인 직을 휴직·사직하거나 종사 중인 영리업무를 휴업·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표-3] 2017년 이후 겸직 신고 및 심사 현황(2024. 5. 29. 기준)

구 분	연 도	가 능	불 가	심사제외 ¹⁾	미심사 ²⁾	총 계
제20대 국회	2017년	61	28	-	4	93
	2018년	31	14	1	-	46
	2019년	1	2	-	55	58
	2020년	-	-	-	10	10
제21대 국회	2020년	59	79	6	4	148
	2021년	46	25	4	3	78
	2022년	39	18	7	2	66
	2023년	27	28	3	13	71
	2024년	2	1	-	1	4

주 1) 친목단체, 임기만료 직위 등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대상이 아닌 직

주 2) 윤리심사자문위 미구성, 심사 전 사직,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직 등
자료: 국회사무처

[표-4] 2017년 이후 영리업무 종사 신고 및 심사 현황(2024. 5. 29. 기준)

구 분	연 도	가 능	불 가	심사제외	미심사	총 계
제20대 국회	2017년	-	-	1	-	1
	2018년	2	3	-	-	5
	2019년	-	-	-	3	3
	2020년	-	-	-	-	-
제21대 국회	2020년	26	-	-	-	26
	2021년	3	-	-	-	3
	2022년	1	-	1	-	2
	2023년	3	-	5	-	8
	2024년	1	-	-	-	1

자료: 국회사무처

개정안은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의원이 겸직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그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이 임기 중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편의를 제고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현행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와 개정안에 따른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검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개정안 제29조의3 신설)가 병립하게 되고, 의원은 이원화된 심사 절차 중 임의로 선택하여 검직 및 영리업무 종사 신고를 할 수 있게 됨.

이 경우 의원이 현행과 같이 사후 심사를 선택하여 의장으로부터 검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불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사직' 또는 '폐업' 외에 '휴직' 또는 '휴업'도 인정되어 그 직위에 대한 보유 가능성이나 그 업무에 대한 종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의원이 개정안처럼 사전 심사를 선택하여 의장으로부터 검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불가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직위에 대한 보유 가능성이나 해당 업무에 대한 종사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사전 심사 제도와 현행 사후 심사 제도 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장은 검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로서 현행 사후 심사에 더하여 사전 심사까지 담당하게 되면 심사가 지연되어 적시에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³⁾

3) 2017년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검직 및 영리업무 종사 관련 회의 현황(2024. 5. 29. 기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회의	14	7	3	1	3	10	14	4
검직 심사 회의 (영리업무 종사 심사 회의)	10 (1)	7 (1)	1 (0)	1 (1)	3 (1)	2 (0)	5 (5)	1 (1)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현행 사후 심사 제도도 정비하여 ‘당선 전’부터 직을 가지고 있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사후 심사를 인정 하되, ‘임기 중’에는 사전 심사만 인정하는 방안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의 직’도 겸직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데, 「국회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당의 직’은 겸직 신고 및 심사 없이도 겸직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 신고의 대상 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개정안에 따라 준용되는 「국회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제29조의2제4항·제5항⁵⁾은 신고 절차라기 보다는 신고에 대한 결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법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준용의 내용을 ‘신고 절차’에서 ‘신고에 대한 결정의 절차 및 방법’으로 명확히 규정

4)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5)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017

6) 법제적 측면의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	수정의견
제29조의3(검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대한 사전 신고) ① 의원이 임기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9조의3(검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대한 사전 신고) ①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고에 대한 결정의 절차 및 방법-----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결과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의원이 임기 중에 해당 직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 ----- ----- -----보고----- -----보고----- -----.
④ 의원이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 ----- -----신고에 대한 결정의 절차 및 방법----- -----.
⑥ 제4항에 따른 신고 결과 영리업무가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의원이 임기 중에 해당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 ----- ----- ----- -----보고-----.